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2.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을 3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만큼 연기하고 있는데, 이를 2027년 1월 1일까지 2년만 연기하려는 것임.

부대의견

가. 서울특별시는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이 2027년까지 완료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 조제5호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안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 조 중 “2024년 12월 3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안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

조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안 법률 제1923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 4. (생략)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 ----- ---. ----- ----- ----- ----- ----. 1. ~ 4. (개정안과 같음)

5. 제7조의6의 개정 규정: <u>2025년 1월 1일</u>	5. ----- ----- <u>2025년 1 월 1일 이후 3년 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날</u>	5. ----- ----- <u>2027년 1 월 1일</u>
제2조(대금지급 정지 에 대한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 은 <u>2024년 12월 31 일까지 효력을 가 진다.</u>	제2조(대금지급 정지 에 대한 유효기간) ----- - <u>2024년 12월 31 일 이후 3년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날</u> ---	제2조(대금지급 정지 에 대한 유효기간) ----- - <u>2026년 12월 31 일</u> ----- ---
제3조(납부증명서 제 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6의 개정규 정은 <u>2025년 1월 1 일 이후</u> 대금을 지 급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부증명서 제 출에 관한 적용례) ----- - <u>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u> ---.	제3조(납부증명서 제 출에 관한 적용례) ----- - <u>2027년 1월 1일</u> ----- -----.
법률 제19233호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 률 제19863호 지방행 정 제재·부과금의 징	법률 제19233호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 률 제19863호 지방행 정 제재·부과금의 징	법률 제19233호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 률 제19863호 지방행 정 제재·부과금의 징

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 한다)	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 한다)	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률 제17091호 지방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제7조 의6 본문의 개정규 정은 <u>2025년 1월 1</u> 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 ----- ----- ----- ----- ----- --- <u>2025년 1월 1</u> <u>일 이후 3년의 범</u> <u>위에서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날</u> -----.	제1조(시행일) ----- ----- -----. ----- ----- ----- ----- ----- --- <u>2027년 1월 1</u> <u>일</u>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5046
----------	------

제출연월일 : 2024. 10. 30.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기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개정안은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을 3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만큼 연기하고 있는데, 이를 2027년 1월 1일까지 2년만 연기하려는 것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률행위”를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로,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민법」 제406조·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로 한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5호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923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에 체납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u>법률행위</u> 를 한 경우에는 「 <u>민법</u> 」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사해행위의 취소) ----- ----- ----- ----- <u>법률</u> <u>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u> ----- 「 <u>민법</u> 」 <u>제406조·제407조</u> 및 「 <u>신탁법</u> 」 <u>제8조</u> ----- -----.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 -----.

1. ~ 4. (생략) 5. 제7조의6의 개정규정: <u>2025년 1월 1일</u>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대금지급 정지에 대한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u>2024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납부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	1. ~ 4. (현행과 같음) 5. 제7조의6의 개정규정: <u>2027년 1월 1일</u>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대금지급 정지에 대한 유효기간) ----- <u>2026년 12월 31일</u>----- -.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납부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
---	--

용례) 제7조의6의 개정규정은 <u>2025년 1월 1일</u> 이후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923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6 본문의 개정규정은 <u>2025년 1월 1일부터</u> 시행한다.	용례) ----- <u>2027년 1월 1일</u>----- -----. 법률 제1923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 -----. ----- ----- ----- <u>2027년 1월 1일</u>-----.
---	---